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06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 박범계 · 임오경 · 전용기

이강일 • 백승아 • 채현일

장종태 • 이기헌 • 추미애

송재봉 · 김태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,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,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세무사,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약사,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음.

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,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,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임.

따라서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의3(벤처기업의 주식매수	제16조의3(벤처기업의 주식매수		
선택권)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	선택권) ①		
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			
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			
업의 설립 또는 기술・경영의			
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			
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			
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			
수할 수 있는 권리(이하 "주식			
매수선택권"이라 한다)를 부여			
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총회			
의 결의는 「상법」 제434조를			
준용한다.	<u>.</u>	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	
3.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	3.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		
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	문성을 보유한 자(대통령령으		
<u>령으로 정하는 자</u>	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